

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행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서울시는 '17년 11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, 경찰, 소방,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공동활용 해왔습니다.

○ 그러나 서울시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할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가 관련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CCTV

안전센터를 구축·운영해왔고, 이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기존 조례에 탈락한 자구와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,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